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0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위성곤·이건태·이학영
복기왕·박정현·박군택
박희승·서영교·윤준병
송기현·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

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203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로, “35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하여 2050년까지의”로 한다.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기본계획의 내용)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
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가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

립하는 때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제10조의3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도계획을 작성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⑥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제출·보고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지방위원회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군·구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계획의 내용, 수립·변경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국가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기본계획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국가기본계획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가기본계획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배분 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기본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
 5. 그 밖에 국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제3조(기본원칙)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u></p>
<p>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u>2030년까지</u>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u>35퍼센트</u>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u><후단 신설></u></p>	<p>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u>다음</u> <u>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연도</u> ----- -----<u>다음 각 호</u> <u>의 구분에 따른 비율</u>----- ----- ----- -----</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

-. 이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본다.

1. 2030년: 100분의 35 이상

2. 2035년: 100분의 60 이상

3. 2040년: 100분의 80 이상

4. 2045년: 100분의 95 이상

② -----
----- 위하여 2050
년까지의 -----

③ -----

----- 위하여 2050년
까지의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

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

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기본계획의 내용)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

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
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
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
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
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신 설>

제10조의3(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신 설>

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가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기본계획 및 제10조의3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하는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 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도계획을 작성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 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제출·보고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위원회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시·군·구계획을

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
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
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계획의 내용, 수
립·변경 절차 및 의견수렴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계획”은 “시·
군·구계획”으로,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
행, 변경 및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국가기본계획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국가기본계획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국가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기본계획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국가기본계획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가기본계획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기본계획 예산의 배분 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 기본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

5. 그 밖에 국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